



## 서울대학교 계정관리 지침

[시행 2025. 1. 16.]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2호, 2025. 1. 16.,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정보화지원과, 02-880-5379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사용에 필요한 통합계정을 관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격)** 통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그룹은 다음과 같다.

그룹명	세부구분
교원	전임, 비전임, 연구원, 조교, 교사
직원	법인, 자체, 기금, 용역, 공익요원
학생	본교생, 교환/방문학생
퇴직자	전임교수 퇴직자, 명예교수, 법인직원 퇴직자, 공로직원
동문	본교 졸업생
일반인	학외 이용자
기관	기관

**제3조(이용자 계정 부여)** ① 개인의 경우 개인당 1개 계정을 부여하여 통합 관리한다.

② 기관의 경우 기관별 1개의 계정을 발급하되, 발급 가능한 기관은 학칙에 명시된 기관으로 한다. 단,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의 기관계정 발급 또는 추가 발급에 대하여는 정보화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③ 계정은 5~20자 범위 내에서 정하고, 신청한 계정은 중복되지 않는 한 신청한 대로 발급한다.

**제4조(이용자 계정 신청 절차)** 계정 신청은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에서 신청한다. 단, 기관그룹의 계정은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번호 변경 및 관리)** ① 비밀번호 변경은 포털에서 한다.

②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20자 범위 내에서 정하고, 정보화본부장의 안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 이용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계정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제6조(이용자 계정 관리의 의무)** ① 개인 계정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계정, 비밀번호 및 계정의 개인정보들을 탈취당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즉시 정보화본부장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화본부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계정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계정이 서울대학교(관리자)의 계정으로 오인되었거나,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계정이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목적,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4. 계정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보화본부장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통보 후 받은 안내사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5. 계정이 현행법령, 학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유효기간)** 이용자 그룹별 계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룹명	세부구분	유효기간
고원	전임, 비전임, 연구원, 조교, 교사	재직기간
직원	법인, 자체, 기금, 용역, 공익요원	재직기간
학생	본교생, 교환/방문학생	자학 및 수학기간
퇴직자	전임교수 퇴직자, 명예교수, 법인직원 퇴직자, 공로직원	평생
동문	본교 졸업생	평생
일반인	학외 이용자	1년
기관	기관	존속기간

**제8조(계정 변경)** 계정 변경은 불가능하다.

**제9조(계정 휴면 및 만료 정책)** ① 계정 탈퇴시, 시스템에서 직접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 ② 퇴직자, 동문 (평생 계정)은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휴면처리 된다. 휴면처리된 계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단, 휴면처리된 계정은 휴면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삭제된다.
- ③ 유효기간이 평생이 아닌 이용자 그룹은 유효기간 상태 만료시점으로부터 즉시 계정이 정지되고, 정지된 계정은 정지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삭제된다. 단, 정지된 일반인 계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④ 계정 이용이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경우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사전 통보 없이 휴면처리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부칙** <제00001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17. 6.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3호, 2025. 1. 16.>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